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덕이중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규칙」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덕이중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대체직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

연번	직종	성명	채용사유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결격사유 조회 여부		비고
						성범죄	아동학대	
1	조리실무사	○○○	병가 대체	2021. 6. 17.	2021. 6. 18.	미조회	미조회	
2	조리실무사	○○○	병가 대체	2021. 7. 6.	2021. 7. 15.	미조회	미조회	
3	조리실무사	○○○	병가 대체	2021. 9. 23.	2021. 9. 24.	미조회	미조회	

### 【조치할 사항】

- ① 덕이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덕이중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소집) 및 「경기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덕이중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종료 후 7일이 경과한 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홍보 미실시 및 회의록 공개 기간 미준수 현황

연번	회기	회의개최일	안전통보일	홈페이지 공개			지적사항
				개최	회의록	결과	
1	2020년 제8회	2021. 2. 19.	2021. 2. 10.	2021. 2. 10.	2021. 3. 4.	2021. 3. 4.	· 회의록 공개기한 미준수
2	2021년 제1회	2021. 4. 12.	2021. 4. 5.	미게시	2021. 4. 16.	2021. 4. 16.	· 회의홍보 미실시
3	2021년 제2회	2021. 5. 24.	2021. 5. 17.	미게시	2021. 5. 31.	2021. 5. 31.	· 회의홍보 미실시
4	2021년 제3회	2021. 6. 21.	2021. 6. 10.	미게시	2021. 6. 25.	2021. 6. 25.	· 회의홍보 미실시
5	2021년 제4회	2021. 9. 17.	2021. 9. 10.	미게시	2021. 9. 23.	2021. 9. 23.	· 회의홍보 미실시

## 【조치할 사항】

- ① 덕이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